(비공식 번역본)

투자위원회 고시
제Por.10/2568호
온라인 투자 촉진증 반납 신청(e-Cancellation)

투자 승인을 받은 기업이 투자 촉진증을 반납할 때, 그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, 불기2520년(1977년) 투자촉진법 제11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, 투자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투자청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 투자 촉진증 반납 신청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다.

1. 이 고시는 불기2520년(1977년) 투자촉진법에 따라 투자 촉진을 받은 자 중 투자 촉진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된다.
2. 투자청은 2026년 2월 1일부터 온라인 투자 촉진증 반납(e-Cancellation) 서비스를 시작하며, 기존의 서류를 통한 촉진증 반납 신청은 2026년 1월 31일자로 종료한다.
3. 온라인 투자 촉진증 취소 신청(e-Cancellation)은 불기2544년(2001년) 전자 거래법(Electronic Transactions Act) 및 그 개정안, 불기2562년(2019년) 사이버 보안법(Cybersecurity Act) 및 그 개정안, 그리고 불기2565년(2022년) 전자 공무 수행법(Act on the Carrying Out of Public Service via Electronic Means) 및 그 개정안을 준용한다.

고시일 2025년 12월 25일

Narit Therdsteerasukdi
(Mr. Narit Therdsteerasukdi)
투자청장